

【 7 】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4.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06.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법적 근거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 나.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다.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라.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마. 심의사항의 관계기관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바. 수당지급과 기타 조례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제11조)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신설·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부서의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등에 출석한 공무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 -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 2006. 1. 1 시행

-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 2006. 1. 1 시행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 -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